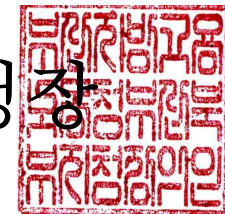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2. 14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강0서	89.02.02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위반 (구직촉진수당 신청서 2회 미제출 및 연락두절)	취업지원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	이사감	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08-1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2. 2. 14. ~ 2022. 2. 28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이경숙(전화 051-330-98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